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31조

I. 서론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 기본법이라고 일컬어진다. 한 국가 내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헌법에 의해 정해지며, 법질서의 기초가 헌법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특정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최고법인 헌법에 부합하는지 또는 위반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여러 기본권을 열거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1항을 통해서 열거하지 않은 기본권까지도 보장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게 되면, 교육 환경이 변함에 따라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AI 디지털교과서 제도가 해당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지 아니면 저해하는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AI 디지털교과서 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II. 교육을 받을 권리

1. 헌법 제31조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¹⁾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²⁾

헌법 제31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유권적 측면에서 발전했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교육을 국가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나아가 평등권적 측면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권적 측면에서 의무교육 기간을 전제로 국가에 대해 무상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급부권을 포함한다.

이러한 헌법의 원리는 교육기본법에 더 구체화 되어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구체화되어 있다.³⁾ 학습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설상 다른 의견도 있으나, 대부

1) 헌법 제31조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교육기본법 제4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분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동법 제4조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평등권적 측면에서 능력 외 다른 기준으로는 차별받아서는 안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자유권적 측면과 평등권적 측면에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권적인 교육의 권리는 교육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유권적 측면에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2. 자유권적 측면

1) 자유권적 측면에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권적 측면은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소극적으로 교육을 받는 데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적극적으로는 국가에게 교육을 위한 일정한 시설과 환경을 배려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적극적으로 국가가 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급부활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사회권적 측면과 연결된다. 헌법 제31조 제3항에서 제6항은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여건의 조성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이 무상이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의 자유와 일맥상통 측면이 있다.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의 중립성이 이를 명시하고 있다.⁴⁾ 교육 내용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을 배제하고, 교육 관계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자유가 있다. 또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학교운영 방식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긍정적 측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저마다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비와 제도 마련 및 실질적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국가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은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공교육 제도를 통해 AI 기술을 접하고 이를 이용하는 교육은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개인별 학습 수준과 속도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 학생의 관점에서 설계된 학습 코스웨어(발제 p.1)를 개발하여, 아동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3) 부정적 측면

국가의 일방적인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은 아동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현재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당사국의 정책 방향성이 모든 아동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발제p.3), 아동들의 동의, 거부, 철회, 설명 방법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발제 p.4). 특히 아동의 특성상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이 참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동들의 교육

4)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현재 심미적 감성, 사회정서 능력과 인성을 함양하는 과목으로서 도덕, 음악, 미술, 체육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한계를 두었다. 그러나 국어, 영어의 과목도 본인의 낱것의 생각을 얘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계에 입력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데이터로 저장되는 상황을 꺼릴 수 있다.

나아가 교사의 교육의 자유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교사는 교육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AI 프로그래밍 깊이 개입하고 수업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까지 결정하게 하면, 교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3. 평등권적 측면

1) 평등권적 측면에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다만 각자의 수학 능력이나 개성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다르게 제공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을 무시하고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이고 평균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학능력에 대한 공개경쟁 입학시험을 통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적으로 부여하거나 대학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가 있다.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뜻한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습 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배려하여 국가는 장애인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능력 이외의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 이유로 차별이 금지된다.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이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2) 긍정적 측면

AI 교과서를 사용하면 개별 학생에 맞는 '교육의 개별화'가 가능해진다. 과거 모두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의 수업은 평균 학력의 학생에 맞춰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균 학력에서 벗어난 학생, 특히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교육적 효과가 없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의 개별화'가 이뤄진다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교육을 받을 권리의 평등권적 측면에 기여하게 된다. 실시간으로 학생의 학습 능력과 부족한 점 등을 파악하여, 각자의 능력에 맞는 문제를 제시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다. 같은 공간, 같은 교실에 있더라도 각자가 필요한 문제를 풀고,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면서 각자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수학의 경우에는 개인마다 강하고 약한 유형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본인이 부족한 영역에 대하여 보다 문제를 풍부하게 풀으로써 약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

3) 부정적 측면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학생 간의 학력 격차가 뚜렷해지는 결과를 나

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교육의 개별화'가 이루어진다면, 학력이 낮은 학생은 같은 학년의 다른 학생들보다 늦은 속도로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교육수준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맞춤형으로 자기 속도에 맞게 학습하게 하는 수업 방식은 일부 학습 동기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효과적이지만,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맞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당장의 학습 성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교과서 내용을 제한한다면, 학생들 사이 교육수준의 양극화와 그에 따른 차별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학생들 중에서 교육의 개별화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 학력이 낮은 학생의 경우, 같은 학급에 있는 다른 학생들보다 늦은 속도로 낮은 교육을 받게 되면 열등감을 느낄 수 있고, 다른 학생들과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속도로 성장하기를 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특수교육법), 통합교육 내세우나, 장애아동 중 일반학교에 다니기를 희망하는 경우 있다. 장애아동으로서 제약이 있으나 일반학교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아동의 희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현재 초중등 교육에서는 학년제를 유지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학년, 같은 학급 내에서 다른 교과서를 가지고 다른 내용을 공부하게 된다. 이는 또래와 교우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성장시키는 아동들의 성장 과정에서, 이질감을 일으키고 경쟁과 열등감을 일으킬 수 있다.

'평등'에는 형식적인 기회를 지향하는 법적 평등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지향하는 사실적 평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였을 때, AI 교과서가 교육을 받을 권리의 평등권적 측면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의문이 있다.

III. 결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그러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자유권적 측면에서, 아동들에게 AI 디지털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거나 공부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정부 정책만으로 아동들이 학습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가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교과서로 교육을 받을지 아동들에게 설명하고 그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더라도 교육 방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평등권적 측면에서, 같은 학급 내의 아이들 간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능력만으로 교육 내용이 달라진다면 균등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으며, 원만한 교우관계와 인성 함양을 추구하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차별이 공공연하게 당연시될 수 있다. 능력에 따른 개별 맞춤 학습을 통해 아동들의 잠재력을 더 성장시킬 수 있지만, 기본문제 외 추가문제나 수업시간 외 복습 또는 숙제 용도로만 맞춤형 문제를 제공하는 등으로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